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5
----------	------

발의연월일 : 2014. 3. 20.

발 의 자 : 이한구·조영홍·강병수·

김영분·안병배·홍성욱 의원

(찬성자 6 인)

1. 제안이유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광역시를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다.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함(안 제4조)
- 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 마.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7조)
- 바.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

- 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 아.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명시함(안 제11조)
- 자.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차.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함(안 제13조)
- 카.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여야 함(안 제14조)
- 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함(안 제15조)
- 파.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별첨
-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 별첨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광역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 및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익신고 정책에 참여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 등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시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등의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8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임용할 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
2.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처리 기준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방법
4.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추천
7.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의 선정
8.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자등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받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4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등과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8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0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p>관계법령</p>	<p><input type="checkbox"/> 공익신고자 보호법</p> <p><input type="checkbox"/>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사항 없음”</p>
<p>특이사항</p>	<p>“해당사항 없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
-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에 대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산업위원회 이한구의원